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12061]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1.09.06] [kimpirje89@naver.com]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10.29.]

[씨에씨에 마라탕]

정 보 공 개 서

[레드립F&B]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레드립F&B]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 소재지] 부산시 사하구 낙동대로 516번길 56 (하단동)

[대표 전화 번호] 1899-7760

[대표 팩스 번호] 051-202-2777

[가맹사업 담당부서/전화번호] 가맹본부 1899-7760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레드립F&B	씨에씨에 마라탕	부산시 사하구 낙동대로 516번길 56 (하단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20.09.06	김필제 김지원 권민성	1899-7760	051-202-2777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330-21-00866	

*레드립F&B는 2020.02.29.일에 설립한 홍주방 가맹본부명에서 가맹본부명칭과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주소를 변경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없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씨에씨에 마라탕]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씨에씨에 마라탕	
상 호	씨에씨에 마라탕 OO점	
상표(서비스표)		출원번호: 40-2021-0123905 출원일자: 2021.07.16
상표(서비스표)	씨에씨에 마라탕	출원번호: 40-2021-0123901 출원일자: 2021.07.16
그 밖의 영업표지	홍주방	등록번호: 4016095890000 등록일자: 2021.05.27.
		등록번호: 4016095880000 등록일자: 2021.05.27.
		등록번호: 4016095870000 등록일자: 2021.05.27.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33,402	26,118	7,284	541,573	153,155	147,595
2022년	174,018	90,378	83,640	847,009	147,832	171,488
2023년	132,813	98,305	34,509	765,753	130,659	130,659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직위	사업경력		
			기 간	직위	담당업무
가맹사업 임원	김필제	대표	2020.02.06.~ 현재	대표	가맹점 관리
	김지원	대표	2020.09.06.~ 현재	대표	회사업무총괄
	권민성	대표	2020.09.06.~ 현재	대표	회사업무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레드립F&B 가맹본부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수는 3명입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1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 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씨에씨에 마라탕 (로고)		2021.07.16. 출원	출원 제 40-2021-0123905	김필제 권민성	-

씨에씨에 마라탕 (로고)	씨에씨에 마라탕	2021.07.16. 출원	출원 제 40-2021-0123901	김필제 권민성	-
---------------------	----------	----------------	----------------------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씨에씨에 마라탕] 가맹사업 현황

1. [씨에씨에 마라탕] 을 시작한 날: 2020년 8월 19일

2. [씨에씨에 마라탕] 연혁

가맹본부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레드립F&B	씨에씨에 마라탕	김필제 김지원 권민성	2020.8.19.~현재	부산시 사하구 낙동대로 516번길 56 (하단동)

3. [씨에씨에 마라탕] 업종

영업표지	업종	
씨에씨에 마라탕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중식	사천요리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씨에씨에 마라탕]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3	13	-	24	24	-	18	18	-
서울	1	1	-	2	2	-	2	2	-
부산	4	4	-	6	6	-	6	6	-
대구	-	-	-	-	-	-	-	-	-
인천	-	-	-	1	1	-	1	1	-
광주	-	-	-	1	1	-	-	-	-
대전	-	-	-	-	-	-	1	1	-

울산	-	-	-	3	3	-	2	2	-
세종	-	-	-	-	-	-	-	-	-
경기	2	2	-	1	1	-	1	1	-
강원	-	-	-	1	1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1	1	-	1	1	-
전남	2	2	-	2	2	-	-	-	-
경북	2	2	-	1	1	-	-	-	-
경남	1	1	-	5	5	-	4	4	-
제주	1	1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씨에씨에 마라탕]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2	11	-	-	-	13
2022	13	19	-	8	1	24
2023	24	3	-	9	-	18

6. [씨에씨에 마라탕]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씨에씨에 마라탕]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18	171,689	11,918	330,600	27,211	14,609	913	
서울	2	-	-	-	-	-	-	
부산	6	184,252	14,112	300,150	26,122	100,427	7,173	
대구	-	-	-	-	-	-	-	
인천	1	-	-	-	-	-	-	5곳 미만
광주	-	-	-	-	-	-	-	
대전	1	-	-	-	-	-	-	5곳 미만
울산	2	-	-	-	-	-	-	5곳 미만
세종	-	-	-	-	-	-	-	
경기	1	-	-	-	-	-	-	5곳 미만
강원	-	-	-	-	-	-	-	
충북	-	-	-	-	-	-	-	
충남	-	-	-	-	-	-	-	
전북	1	-	-	-	-	-	-	5곳 미만
전남	-	-	-	-	-	-	-	
경북	-	-	-	-	-	-	-	
경남	4	-	-	-	-	-	-	5곳 미만
제주	-	-	-	-	-	-	-	

8. [씨에씨에 마라탕]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씨에씨에 마라탕]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일)
2023	18	604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씨에씨에 마라탕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지 않으며,

당사에서 모든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씨에씨에 마라탕]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해당사항 없음					
광고						
판촉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별첨 4참조).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충무동 지점	부산시 서구 보수대로 15	051-247-5452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귀하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비 고
계좌번호를 은행으로부터 부여받는 경우	①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예치신청서 작성 → ② 가맹본부가 가맹금예치신청서 은행에 팩스로 발송 → ③ 국민은행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좌번호를 휴대폰으로 안내 → ④ 전송 받은 계좌번호로 은행 방문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맹금 예치	
매장 방문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은행(e-비즈니스사업단)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상계좌교부 → ④ 가상계좌에 가맹금 예치	
인터넷뱅킹 이용시	①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은행(e-비즈니스사업단)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상계좌교부 → ④ 인터넷뱅킹(www.kbstar.com)접속 → ⑤ 가상계좌에 가맹금 이체	

[국민은행 계좌가 없어도 가맹금예치가 가능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피해보상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씨에씨에 마라탕]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 (신규 가입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내역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7,700]				
가입비	5,500	1.가입비 2.최초 가맹점 오픈을 위한 정보, 자료제공의 대가 3.최초 가맹점 오픈을 위한 인력 지원의 대가	가맹점 오픈이후 반환안됨. 단 오픈전 해약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소멸성실제비용	소멸성 비용으로 반환되지 않음
교육비	2,200	개점 전 교육비	교육 이후 반환안됨. 단 오픈 및 교육 전 해약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을 위해 소멸되는 소멸성비용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나) (기존 가맹점 양수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내역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7,700]				
양수 가맹비	5,500	1. 양수 가맹점 운영을 위한 정보, 자료 제공의 대가 2. 양수 가맹점 오픈을 위한 인력지원의 대가	가맹점 영업시작 이후 반환안됨. 단 오픈전 해약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오픈을 위해 소요된 소멸성 실제비용	소멸성 비용으로 반환되지 않음
교육비	2,200	양수 개점 교육비	교육 이후 반환안됨. 단 오픈 및 교육 전 해약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을 위해 소용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반환조건	반환될수 없는사유
총계	[5,000]			
(계약이행) 보증금	5,000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금액	계약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을 정산후 반환	미납채무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사유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신규사업자	기존가맹점양수자
합계	12,700	12,700
가맹비	5,500	5,500
교육비	2,200	2,200
(현금)보증금 ※ 부가세 해당 없음	5,000	5,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67,100	3,355	개별로 지급	개별사항 참조	66㎡ 기준
필수설비(정착물) 간판	협력업체	4,400	220	설치 7일안에 지급	설치 전 계약취소	면적당 상이하할 수 있음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협력업체	35,200	1,760	설치 7일안에 지급	공사 전 계약취소	면적당 상이하할 수 있음
최초 공급 상품 비용	가맹본부	5,500	275	물품 공급 1일 이전	상품 미공급시	점포마다 다를 수 있음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자율	22,000	1,100	가맹점사업 자가 구입	없음	가맹점 사업자가 구입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시 위약금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 (둘 중 빠른 시점) 귀하의 귀책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귀하의 점포가 개업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되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을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해약 후 즉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20%
계약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50%
계약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10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70%

6)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 희망자	1)가맹희망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등을 고려하여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의사결정권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8)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9) 금전 지급 방법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인의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준 금액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지급시기
예치가맹금 (계약금)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계약 체결시
	12,700	12,700	

[※ 보증금(현금)은 부가세 제외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오픈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 여부 및 반환 조건	내역
로열티	가맹본부	220	매월 1일	후불로 반환 안됨	영업표지 및 기타지식재산권 사용등의 대가
개점 이후 교육비	가맹본부	기본교육 무료 특수사항은 실비청구	개별청구	실비로 반환 안됨	수시교육
	가맹본부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가맹점사업자가 의뢰하여 개별적으로 실시될 경우에 실비로 청구되기 때문에 반환 되지 않음	특별 교육
	가맹본부	일정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교육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재교육
관측 분담비	가맹본부	공동 관측시 기획비용은 당사부담이며 관측물 제작비용은 가맹점사업자부담 임. 그밖의 관측비용의 분담은 협의하여 결정		관측활동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관측
광고 분담비	가맹본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전국 또는 지역단위로 시행되는 공동

		일부 부담 (가맹본부 30%,가맹점사업 자측 70% 분담원칙) 될수 있음			광고 (브랜드광고, 상품광고 등)
POS 사용료	-	-	-	-	POS 사용대가
점포환경 개선	미정 해당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가맹점사업 자부담하여 업체와 협의	업체와 협의	
지연이자	가맹본부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	-	-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지급기한을 경과 했을시 부담

㉠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 재고관리, 감독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 POS, ERP 시스템, 회계장부(이하 회계자료라 한다)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자료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귀하의 점포의 전산 매출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가맹점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씨에씨에 마라탕]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씨에씨에 마라탕]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행보증금, 양수가맹비 등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씨에씨에 마라탕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당사로부터 부여 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가)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씨에씨에 마라탕 가맹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나)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그 밖의 부담 비용

귀하가 그밖에 부담하여야 하는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씨에씨에 마라탕]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가 (별첨 3 참조)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씨에씨에 마라탕]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해당 없음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당사로부터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제공·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정한 메뉴 이외에는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시장변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재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가맹본부가 지정한 메뉴를 판매해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 또는 알선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메뉴	가 격
마라탕	100g / 1,600 원
마라샹궈	100g / 3,000 원
꿔바로우	소 10,000 원
꿔바로우	대 18,000 원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사천요리 (꿔바로우, 마라샹궈, 마라탕) 등을 전문으로 하는 중화요리 전문점	씨에씨에 마라탕	홍주방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 중앙을 기준으로 반경 1Km (역세권, 중심가 등은 개별 지도 표시)	별지에 반경설정 또는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하나 서술할 수 있음)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180일~90일 사이에 변경된 조건에 대한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씨에씨에 마라탕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제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씨에씨에 마라탕]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9조 1항 1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9조 1항 2호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9조 1항 3호
○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9조 1항 4호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9조 1항 5호
○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9조 1항 6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제 6조 1항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제 6조 2항
○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제 6조 3항
○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제 6조 4항
○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제 6조 5항
○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제 6조 6항
○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제 6조 7항
○ 가맹점의 업무현황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 허용	제 6조 8항
○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금지	제 6조 9항
○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제 6조 10항
○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제 6조 11항
○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기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제 6조 1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40조 2항 1호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40조 2항 2호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0조 2항 3호
○ 삭제	40조 2항 4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40조 2항 5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초과)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0조 2항 6호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 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40조 2항 7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40조 2항 8호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40조 2항 9호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40조 2항 10호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 시정이 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40조 6항
○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 당사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개월 전에 당사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하고 당사가 제시하는 합의 해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1년 이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일천만(W10,000,000)원의 계약해지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및 상속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잔여 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 가맹계약조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가)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 수 및 정보공개서 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 (정보공개서 상의 양수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존계존비속 영업 상속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营业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나 위탁하게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행사 및 위탁자는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귀하가 [씨에씨에 마라탕]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자신 및 제3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없이 씨에씨에 마라탕과 동종업종 (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 경영하여서는 안됩니다.

계약종료 후 당사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씨에씨에 마라탕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지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 사천요리 (튀바로우, 마라샹궈, 마라탕) 전문점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씨에씨에 마라탕]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11:00~23:00	365일 연중 무휴 영업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원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가맹점사업자는 효율적인 가맹점 운영과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66㎡ 기준 홀 및 주방 상시 인원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제품의 표준화	담당자 매장 방문 → 매뉴얼 준수 및 사입체크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완료	수시	
POS사용	담당자 매장 방문 → POS사용 상태점검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씨에씨에 마라탕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브랜드광고, 상품광고 등을 포함)를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광고	광고비의 30%	광고비 70% 중 가맹점사업자수	광고 계획 공고 (광고 1개월 전)→ 통지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 납입
	상품광고등	100%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공동 판촉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기획비용부담	제작비용부담	행사 계획 공고 →가맹점 부담액 제시→ 행사에 따른 분담금 납입
		기획, 제작 비용 이외는 협의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 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그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의 양 당사자로서, 당사는 귀하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위약벌 이외에 당사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 배상 및 위약벌 사유	관련계약조문
귀하는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일 이후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또는 계약기간 내 정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오천만원 (₩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45 조 1항 6호
귀하가 거래처요구품목에 대하여 당사 또는 협력업체를 통해 구입하여 사용하지 않고 당사의 사전동의 없이 별도의 거래처를 통하여 거래처요구품목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일백만원 (₩1,000,000)을 지급하여야 하며, 시정전까지 적발 익일부터 위약금으로 하루 당 금일십만원 (₩100,000)씩 당사에 지불하여야 한다.	45조 1항 1호
귀하가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지정사양 (제조원/ 판매원 등) 품질요구 품목 이외에 품목을 구입/ 사용하거나 지정된 메뉴 이외에 메뉴를 판매할 경우 (냉장고	45조 1항 2호

보관 시에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적발 즉시 위약별로 금이백만원 (₩2,000,00)을 지급하여야 하며, 시정전까지 적발 익일부터 위약금으로 하루 당 금일십만원 (₩200,000)씩 당사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귀하가 가맹점이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 폐업처리하거나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별로 금오백만원 (₩5,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45조 1항 3호
귀하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가 계약기간 내에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등을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 귀하는 계약종료 익일부터 위약별로 1일 금삼십만원 (₩300,000)씩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5조 1항 4호
당사 또는 당사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이를 배상한다	45조 2항
귀하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사 또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귀하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5조 1항 5호
위 위약별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5조 1항 7호
본 계약에 규정된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날까지 연이율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44조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60일 정도로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비고
가맹희망자문의	-전화 문의 또는 방문 - 인터넷 홈페이지	1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개시이전부 담 금전방법참조
1차 상담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7일이상	
정보공개서, 계약서 및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14일 후 계약	
가맹계약 및 계약금지금(예치포함)	- 가맹계약 체결	당일	
점포계약	-점포입지선정 -점포개발 착수 -상권분석	필요시 실시	
점포실측/ 설계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 (소수점 첫째자리)	38컴퍼니와 상의	
도면 작성	- 인테리어/별도/추가공사 도면협의	38컴퍼니와 상의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공사 실시	35일이내	
기자재 및 소품설치	- 기자재 및 소품설치	7일이내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점주) -교육 (아르바이트)	14일 내외	
점포 개설	-오픈리허설(가맹본부 판단후 오픈결정) -오프닝 행사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거래사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 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집기·장비 교체비용	○가맹점사업자의 투자금액(임차료 등), 월평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50%~10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50~80% -단, 집기·장비 교체비용은 20% 부담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판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계약이행, 표준화, 가맹점별 시장조사. 판촉,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가맹본부가 개별 가맹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 점방문 → 가맹점 현황 분석→ 가맹본부는 경영 지도 후 그 결과 및 개선 방안 서면 제시	가맹본부 부담	필요시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계약이행, 표준화, 가맹점별 시장조사. 판촉,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가맹점사업자 특별경영지 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 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가 맹본부는 경영지도 후 그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요청시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씨에씨에 마라탕]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 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	-	-	-	-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씨에씨에 마라탕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점 전 교육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운영, 상품교육	개별 또는 집단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실 매장에서의 서비스 방법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 상기 교육은 프로그램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점전 교육훈련 종료시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귀하에게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나)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별첨 1 참조)

당사는 효율적인 씨에씨에 마라탕 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이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간	비고
수시 교육	가맹점통지 사항 및 의견수렴	개별 또는 집단강의	개별협의	필수교육
특별 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요청 내용	개별교육		선택교육
재교육	가맹점 관리 및 운영	개별교육		필수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씨에씨에 마라탕]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개점전교육	1주 내외	2,200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	개별협의	기본 교육 무료, 특수사항은 실비 청구	필요시 실시
특별교육	개별협의	개별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에 산정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 (필수) 및 기타인원 (협의)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전협의 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갱신 거절 사유가 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2023-12-31 기준으로 직영점이 없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팀(1899-776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교육·훈련의 내용과 시간

제목 [제목없음]

1일차

10시-11시 : 오픈준비교육(야채손질)
11시-13시 : 홀서빙및메뉴얼교육(홀야채손질)
13시-15시 : 주방위생교육
15시-15시30분 : 점심식사
15시30분-21시30분 : 주방 마라탕조리 및 마감교육

2일차

10시-11시 : 오픈준비교육(야채손질)
11시-13시 : 홀서빙메뉴얼교육
13시-15시 : 주방마라탕조리교육
15시-15시30분 : 점심식사
15시30분-21시30분 : 주방 꺾바로우조리 및 마감교육

3일차

10시-11시 : 오픈준비교육
11시-14시 : 홀서빙메뉴얼교육(야채손질 보관법)
14시-15시 : 점심식사
15시-19시30분 : 주방 마라상귀 및 마감교육

4일차

10시-11시 : 전체오픈준비교육
11시-17시30분 : 주방교육(야채손질 회전율)
17시30분-22시 : 주방 마라탕 마라상귀 꺾바로우 조리 및 전체교육

5일차

10시-17시 : 오픈 야채손질 및 주방 마라탕 마라상귀 꺾바로우 조리교육
17시-22시 : 홀 주방 야채다듬기 오픈 마감 / 전체점검교육

[별첨 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별첨) 2023년도 B/S , I/S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별첨 3]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KB 가맹금예치제도』 이용 신청서(가맹본부용)

거래구분 : 신청서 (제발급)
가맹본부 KB-PIN : 1403560736-00002 가맹본부일련번호:1
가맹본부사업자번호: 155-13-01027 일출거래번호 : 959101-01-359257
가맹본부대표자명 : 권민성 김원재
가맹본부사업자명 : 권민성 (홍주방)
프랜차이즈명 : 홍주방
가맹본부관리부명 : 홍주방

KB 가맹금 예치제도 이용 약관

- 1. 이 약관은 KB국민은행(은행)과 KB국민카드(카드)가맹본부(가맹본부)가 체결한 KB 가맹금 예치제도에 관한 것으로, 본 약관을 통해 KB국민은행(은행)과 KB국민카드(카드)가맹본부(가맹본부)가 체결한 KB 가맹금 예치제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 2. 본 약관은 KB국민은행(은행)과 KB국민카드(카드)가맹본부(가맹본부)가 체결한 KB 가맹금 예치제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 3. 본 약관은 KB국민은행(은행)과 KB국민카드(카드)가맹본부(가맹본부)가 체결한 KB 가맹금 예치제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 가맹금예치제도 주요업무

- 예치
예치금에 대해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월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단, 융통금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약관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예치금은 다음의 경우에 가맹본부가 신고한 신고계좌로 자동 지급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인티넷뱅킹 통화에 예치금 지급승인 한 경우 지급승인일과 익영업일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금 예치시 등록된 가맹계좌계좌일로부터 2개월에 해당하는 날의 익영업일
(2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지급보류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 반환
가맹본부가 인티넷뱅킹을 통하여 예치금반환승인을 하면 반환통목일 익영업일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예치금 예치시 등록된 신고한 출금계좌로 자동 반환 합니다.
- 지급보류
가맹점사업자가 채소, 말선신형, 조정선형, 종래선형, 공평위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 인티넷뱅킹을 통하여 예치금지급보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합니다.
- 예치금 예치, 지급승인, 반환승인, 지급보류 등록/해제는 인티넷뱅킹으로 가능하며, 인티넷뱅킹 거래에 대한 책임은 거래 상대방에게 귀속합니다.
-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는 분쟁에 신고한 본인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정보를 은행에 즉시 신청 하여 최신의 정보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분쟁 및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KB 가맹금예치제도에음약관』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금 예치제도 이용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09/27

국인은행

홍주방



(직인)

KB

[별첨 5] 인근 가맹점 현황

가맹희망자 인근의 가맹점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별첨 6] 정보공개서 등 제공 확인서

□ 가맹점희망자 보관용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 확인서	
• 가맹본부명	
• 브랜드명	
[가맹희망자]	
① 성 명	[서명 또는 인]
② 주 소	
③ 전화번호	
④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⑤ 제공받은 장소	※ 구체적으로 기재 (가맹본부 사무실, oo 커피숍 내, 이메일 등)
⑥ 수령확인문구	상기 가맹희망자 본인은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를 정히 (수 령 하 였 을)
	※ "수령하였음" 이라고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기재요망
[가맹본부 제공 담당자]	
• 제공자명	[서명 또는 인]
※ 주의사항 : 가맹본부 담당자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① ~ ⑥의 빈칸을 반드시 가맹희망자의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 확인서

• 가맹본부명

• 브랜드명

[가맹희망자]

① 성 명

[서명 또는 인]

② 주 소

③ 전화번호

④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⑤ 제공받은 장소

※ 구체적으로 기재 (가맹본부 사무실, oo 커피숍 내, 이메일 등)

⑥ 수령확인문구

상기 가맹희망자 본인은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를 정히 (수 령 하 였 음)

※ "수령하였음" 이라고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기재요망

[가맹본부 제공 담당자]

• 제공자명

[서명 또는 인]

※ 주의사항 : 가맹본부 담당자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① ~ ⑥의 빈칸을 반드시 가맹희망자의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및 가맹계약서 수령확인증(가맹희망자용)

[씨에씨에 마라탕] 의 [씨에씨에 마라탕]

1. 정보공개서 수령 관련 사항

가. 본인은 정보공개서(최종등록일: 년 월 일)를 년 월 일에 제공 받았습니다.

나.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장 소
-----	-------------------	-----

다. 가맹희망자의 인적 정보 등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점포 예정지	

*빈칸 내용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직접 작성할 것

성명: _____(서명/날인)

2. 본인은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년 월 일에 제공받았습니다.

성명: _____(서명/날인)

3. 본인은 가맹계약서를 년 월 일에 제공받았습니다.

성명: _____(서명/날인)

4. 본인은 본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및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공받은 자료로 계약체결의 용도 외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성명: _____(서명/날인)

제공자 : 가맹본부 씨에씨에 마라탕 대리인(담당자) _____(서명/날인)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및 가맹계약서 수령확인증(가맹본부용)

[씨에씨에 마라탕] 의 [씨에씨에 마라탕]

1. 정보공개서 수령 관련 사항

가. 본인은 정보공개서(최종등록일: 년 월 일)를 년 월 일에 제공 받았습니다.

나.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장 소
-----	-------------------	-----

다. 가맹희망자의 인적 정보 등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점포 예정지	

*빈칸 내용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직접 작성할 것

성명: _____(서명/날인)

2. 본인은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년 월 일에 제공받았습니다.

성명: _____(서명/날인)

3. 본인은 가맹계약서를 년 월 일에 제공받았습니다.

성명: _____(서명/날인)

4. 본인은 본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및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공받은 자료로 계약체결의 용도 외 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성명: _____(서명/날인)

5. 본인은 상기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제공 받았습니다.

성명: _____(서명/날인)

제공자 : 가맹본부 씨에씨에 마라탕 대리인(담당자) _____(서명/날인)